

보도시점 2026. 7. 14.(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6. 7. 13.(월)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 소형차 기준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하여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

1. 추진배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연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당해 연도의 기준값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2030년 수송부문 목표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대형 상용차는 2030년까지 기준을 새로 정하고, 소형차는 현행 2030년까지의 기준을 일부 조정한다.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천 8백만톤에서 2030년 6천 1백만톤까지 감축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작년 10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자동차 제작사,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2. 중·대형차 감축 의무화

중·대형 상용차는 소형차 대비 차량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 감축이 시급한 분야지만, 자동차 제작사들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비개선 기술 적용, 전기·수소차 개발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그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해 왔다.

※ (자발적 감축)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의무화 때 사용 가능한 인센티브(크레딧) 부여
→ (의무화) 감축목표 미달시 상환의무가 부과되며, 미상환시 과징금 부과

2027년부터는 차종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감축을 의무화하여, 2030년까지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구 분	'21~'22	'23	'24	'25	'26	'27	'28	'29	'30
의무화	기준년도	자발적 감축				1단계	2단계		3단계

* (1단계)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화물, 트랙터 → (2단계) 중대형승합 → (3단계) 총중량 15톤 미만 중형화물, 덤프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감축이 의무화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은 연비개선 기술 개발 및 차종 출시에 필요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전면 의무화되는 203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 과징금은 이번에 함께 입법예고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

아울러, 중·대형 상용차 시장에서 전기·수소차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수소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 혜택(슈퍼크레딧)을 연장하여 지속 적용하고, 수소내연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 혜택도 신설한다.

3. 소형차 기준 조정

소형차 부문은 지난 2020년 현행 기준 수립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송부문 목표배출량의 수정(강화) 및 주요국의 규제 수준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차별 기준을 조정한다.

소형차 기준은 ①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및 ②소형화물차, 11~15인승 승합차로 구분하여 적용 중이며,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매년 점차 강화되어 '30년에는 ①은 현행 70g/km에서 54g/km으로, ②는 146g/km에서 98g/km으로 조정된다.

한편, 강화되는 기준에 맞춰 자동차 업계가 전동화 차종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에 부여하는 판매실적 추가 혜택(슈퍼크레딧)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충분한 상환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판매규모별 규제 이행능력을 고려하여 기존 3단계였던 제작사 구분을 ‘중규모 제작사’ 기준을 신설하여 4단계로 세분화*하고 구분 기준을 현행화하는 등 이행 기반을 현실화한다.

* (기존) 일반-소규모-개별 → (개정) 일반-중규모-소규모-개별

아울러, 유럽연합에서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간접감축을 일부 도입하는 등 최근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당해연도 기준의 5%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감축 방식을 시범 적용한다.

4. 향후계획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서는 7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60일 동안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포할 계획이다.

※ 같은 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의견수렴 예정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중심축”이라며,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송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차질없이 달성하는 한편, 우리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기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소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 개요.
2. 소형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
3.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920)
		담당자	사무관	김지수 (044-201-6921)



1. 개요

- ☐ (목적)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운영 중(소형차 '12년~, 중·대형차 '23년~)
- ☐ (내용)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연간 판매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관리 필요
 - ※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기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
 - (대상) 승용·승합(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 ※ 중·대형차는 자발적 감축 방식으로 운영 중으로, '27년부터 의무감축목표 설정 예정
 - (이행수단) 기준 미달시 과징금 부과(판매량×기준초과량(g/km)×요일)
 - ※ 과징금은 매출액의 1% 이내 한도

2. 온실가스 기준(현행)

구 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소형* (g/km)	승용·승합(10인이하)	97	97	95	92	89	86	83	80	75	70
	소형화물·승합(11-15)	166	166	164	161	158	158	155	152	149	146
중·대형 상용차** (g/t·km)		기준년도		△2%	△4.5%	△7.5%	△12%	의무감축목표 설정('27~)			
				자발적 감축							

* 소형차의 제작사별 실제 적용기준은 판매차량의 평균 중량에 따라 보정된 값으로 적용

** 중·대형차는 기준년도('21~'22년) 대비 감축목표(%) 부여

3. 주요국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 ☐ 승용·승합(~10인) (단위: g/km)

연도	우리나라		유럽연합	미국*
	현행	행정예고안		
'26	86	86	83.4	81.4
'30	70	54	44.1	61.5

- ☐ 화물·승합(11~15인) (단위: g/km)

연도	우리나라		유럽연합	미국*
	현행	행정예고안		
'26	158	158	137.2	114.3
'30	146	98	96.8	79.5

* 미국 기준은 트럼프 행정부 온실가스 규제 폐지('26.2) 이전 연방 온실가스 기준

□ (감축목표) '30년까지 기준년도 대비 △30% 감축목표

구 분	'21~'22	'23	'24	'25	'26	'27	'28	'29	'30
감축목표	기준년도	△2%	△5%	△7.5%	△12%	△16.5%	△21%	△25.5%	△30%
의무화	자발적 감축					1단계	2단계		3단계

※ (1단계)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화물 트랙터 → (2단계) 중대형승합 → (3단계) 15톤 미만 중형화물 덤프

□ (유연성) 전동화 촉진 및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한 유연성 부여

- (전동화 촉진) 전기·수소차 인센티브 유지, 수소내연차 인센티브 신설
- (이행부담 완화) '27~'30년 실적 이월·상환기간 부여(5년)

구 분	현 행	개정(안)
전동화 촉진 (슈퍼크레딧 등)	전기·수소차 슈퍼크레딧* 부여 * 판매량을 추가 인정하여 평균 배출량을 낮춰주는 인센티브	전기·수소차 슈퍼크레딧 현행 유지(연장)
	수소내연차 슈퍼크레딧 없음	수소내연차 슈퍼크레딧 신설
이행능력 고려	간접감축 인정 없음	간접감축 인정 신설 (재생E를 직접 사용·생산 등)
기 타	이월·상환기간 없음	이월·상환 5년('27~'30년 실적)

□ (과징금) 의무감축 이행을 위해 과징금 설정,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출발하여 의무화 전면시행 후 단계적으로 상향

구 분	'27	'28	'29	'30	'31	'32	'33
개정안	50만원g/ton·km				140만원		220만원

※ 유럽연합 과징금(CO₂g/ton·km당 4,250 유로) 및 소형차 과징금 수준(우리나라:EU=약 1:3)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수준 설정

붙임 3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개정(안)

□ (기준) 2030 수정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27~'30년 기준 강화

- (승용) '30년 기준 ^{현행}70 → ^{개정(안)}54 g/km
- (소형화물·승합) '30년 기준 ^{현행}146 → ^{개정(안)}98 g/km

구 분	기 준	'26	'27	'28	'29	'30
승용 승합(~10인)	현 행	86	83	80	75	70
	개정(안)	86	81	74	65	54
소형화물 승합(~15인)	현 행	158	155	152	149	146
	개정(안)	158	128	118	108	98

□ (유연성) 전동화 촉진, 이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유연성 부여

- (전동화 촉진)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의 인센티브 일몰을 연장('26 → '29년)하되 단계적으로 축소
- (이행능력 고려) 제작사 규모별 기준을 4단계로 개편(중규모 신설),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생산시 일부 간접감축 인정(5% 한도)
- (이행부담 완화) '27~'30년 실적 미달성분 상환기간 확대(최대 4→5년)

구 분	현 행	개정(안)														
전동화 촉진 (슈퍼크레딧)	전기·수소차, PHEV, HEV 슈퍼크레딧* 일몰 (~'26년) * 전기택시·소형화물은 추가 인센티브	슈퍼크레딧 연장(~'29년, 단계적 축소) * 전기택시·소형화물 추가 인센티브 포함														
이행능력 고려	판매규모별 기준 3단계 차등 적용	4단계 차등 적용(중규모 제작사 신설)														
	<table><tr><td>4,501대~ (일반)</td><td>~4,500대 (소규모)</td><td>~500대</td></tr><tr><td>기본 배출허용기준</td><td>10%~14% 완화기준</td><td>제작사별 개별협의</td></tr></table>	4,501대~ (일반)	~4,500대 (소규모)	~500대	기본 배출허용기준	10%~14% 완화기준	제작사별 개별협의	<table><tr><td>5만대~ (일반)</td><td>~5만대 (중규모)</td><td>~1만대 (소규모)</td><td>~1천대</td></tr><tr><td>기본 배출 허용기준</td><td>7~9.8% 완화기준</td><td>10~14% 완화기준</td><td>제작사별 개별협의</td></tr></table>	5만대~ (일반)	~5만대 (중규모)	~1만대 (소규모)	~1천대	기본 배출 허용기준	7~9.8% 완화기준	10~14% 완화기준	제작사별 개별협의
	4,501대~ (일반)	~4,500대 (소규모)	~500대													
기본 배출허용기준	10%~14% 완화기준	제작사별 개별협의														
5만대~ (일반)	~5만대 (중규모)	~1만대 (소규모)	~1천대													
기본 배출 허용기준	7~9.8% 완화기준	10~14% 완화기준	제작사별 개별협의													
간접감축 인정 없음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생산한 경우 일부 간접감축 인정															
기 타	초과실적 : 이월 5년 / 미달성 : 상환 3~4년	이월·상환 5년('27~'30년 실적)														